

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 참여자격이 확대됩니다!

* I 유형 :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 X6개월)

01 7.1.부터

고시개정

18~34세의 청년은
가구단위 재산이 4억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(기존) 재산 3억원 이하 → (7.1.~) 재산 4억원 이하

02 9월중 〈별도공지〉

시행령 개정
(입법예고 7.1~8.10)

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는
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% 이하이고
재산이 4억원 이하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(기존) 중위소득 50%이하 & 재산 3억원 이하 → (9월중)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 4억원 이하

03 신속히 〈별도공지〉

법 개정

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
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

참여자격 변경 내용

		소득(중위소득)			재 산		
		기존	7.1~	9월<별도공지>	기존	7.1~	9월<별도공지>
요건심사형		50% 이하	50% 이하	60%이하	3억원 이하	3억원 이하 (청년) 4억원이하	4억원이하
선발형	비경활	50% 이하	50% 이하	60%이하	3억원 이하	3억원 이하	4억원이하
	청년특례	120% 이하	120% 이하	120% 이하	3억원 이하	4억원이하	4억원이하

* 취업경험 요건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